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53
----------	-------

발의연월일 : 2025. 7. 30.

발 의 자 : 조지연 · 이양수 · 박충권
최수진 · 서천호 · 엄태영
김장겸 · 강선영 · 김예지
서명옥 · 우재준 · 김용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장기요양요원의 이직률을 높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및 제35조의6 신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적정 인건비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이하 “적정 인건비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35조의6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⑥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⑥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 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⑦ (생 략)</u>	<u>⑧ (현행 제7항과 같음)</u>
<u><신 설></u>	<u>제35조의6(적정 인건비 기준) 보 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 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이하 “적정 인건비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기 요양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u>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 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 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 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의2(시정명령)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제35조의6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u>
--------------------	--